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동 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과 지원보다는 “고독사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계층과 형태는 다양한 반면 그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해서는 고독사의 예방과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하고, 지원 사업에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안 제7조제 10호) 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가족, 이웃, 사회와 단절된 다양한 계층의 고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장년층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